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01
------	-----

2019. 2. 26.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2월 1일,  
정재웅 의원(찬성의원 9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2.26.) 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정재웅 의원)

-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금융인력유치를 위해 관련법령에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최근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금융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서울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담도록 규정(조례 제3조 2항)하고만 있을 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의 근거규정은 부재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글로벌 금융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또한, 현재 국내·외국계 금융기업이 서울 금융중심지에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업이 서울 진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임시사무소를 개설 할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서울 금융중심지에 국내 금융기관이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을 위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서울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단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글로벌 금융혁신 인력양성과 서울 진출 금융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 금융중심지로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임시사무소'를 추가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2015년에 제정되었음.
- 이 조례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sup>1)</sup>에게는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제5조), ▷ 신규고용자금(제6조), ▷ 교육훈련자금(제7조)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기업	(주)쿼터백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쿼터백자산운용 (주)라살자산운용 (주)트리니티자산운용	(주)교보플래닛생명보험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파인밸류자산운용

1) 서울시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을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에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밀리니움인마크자산운용 (주)교보플래닛생명보험 (주)초상증권(한국)	(주)아스트라자산운용 (주)라이노스자산운용 (주)아름드리자산운용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57,926	160,000	239
고용보조금	81,000	36,000	69,000
교육훈련비	449	9,000	-
보조금 합계	139,375	205,000	69,239

-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서울로 진출 여부를 검토하는 ‘임시사무소’ 개설까지 추가해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유치를 적극 촉진하려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기관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와 조건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한도가 조례 [별표]에 규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사항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조례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

항 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과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또한, 현재 보조금 지원대상을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사무소’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 고용 인원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밖에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됨.
- 부산시의 경우에도 2017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양·과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공동학위과정으로 개설해 운영 중에 있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조건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임시사무소의 정의와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추가함.

### 나. 수정안 주요 내용

- 임시사무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2호).
- 내국인 상시 고용 2명을 초과하는 임시사무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제2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1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조건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임시사무소의 정의와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추가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임시사무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2호).

나. 내국인 상시 고용 2명을 초과하는 임시사무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안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4조제1항과 제2항에”로 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u> <u>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u> <u>자를 말한다.</u></p> <p>3. <u>“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u> <u>자를 말한다.</u></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u> <u>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u> <u>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u> <u>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u></p> <p>3. <u>“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u> <u>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u> <u>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u> <u>사무소를 말한다.</u></p> <p>4. ~ 8.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u>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u> <u>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u></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u>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u> <u>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u></p>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

② (현행과 같음)

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 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  
부 또는 지점을 신  
설하는 경우

<신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서울 금  
융중심지에서 창업,  
이전, 신설을 추진하  
기 위해 임시사무소  
를 설치하는 금융기  
관에 대해 필요한 자  
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기  
간은 1년 이내로 한  
다.

<삭제>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  
금 지원대상의 범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다.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이를 지원대  
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

⑤ (현행 제3항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다.

1. (개정안과 같음)

<p>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u>&lt;신설&gt;</u></p>	<p>2.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p>	<p>2. (개정안과 같음)  3. <u>「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u></p>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u>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u>제4조제1항과 제2항에</u>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p>
<p><u>&lt;신설&gt;</u></p>	<p>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p>	<p>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개정안 제1항과 같음)  ② -----</p>

	<p>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u>예산의 범위 내에서</u>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p> <p>-----</p> <p>----- <u>예산의 범위에서</u> -----</p> <p>-----</p> <p>-----.</p>																								
<p><u>제16조 ~ 제18조</u> (생략)</p>	<p><u>제17조 ~ 제19조</u>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p>	<p><u>제17조 ~ 제19조</u>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p>	<p>[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p>	<p>[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td> </tr> <tr> <td>신규 고용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td> </tr> <tr> <td>교육 훈련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td> </tr> </tbody> </table>	항목	지원 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교육 훈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td> </tr> <tr> <td>신규 고용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td> </tr> <tr> <td>교육 훈련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td> </tr> </tbody> </table>	항목	지원 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교육 훈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td> </tr> <tr> <td>신규 고용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td> </tr> <tr> <td>교육 훈련 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td> </tr> </tbody> </table>	항목	지원 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교육 훈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항목	지원 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교육 훈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항목	지원 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교육 훈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항목	지원 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li> </ul>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교육 훈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li> </ul>																									
<p>※ <u>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u></p>	<p>※ <u>(현행과 동일)</u></p>	<p>※ <u>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u></p>																								

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  
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  
상으로 산정함

<신 설>

<신 설>

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  
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  
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  
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  
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  
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  
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  
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  
으로 산정함.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4조제1항과 제2항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항목	지원 기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0이하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

-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3. “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p> <p>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p> <p>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p>

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6조 ~ 제18조 (생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li> </ul>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기관당 2억원 이내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li> <li>※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li> </ul>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li> </ul>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 대 6개월의 <u>범위 내에</u> <u>서</u> 월 50만원 이내 (1 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  
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신 설>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 대 6개월의 <u>범위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  
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  
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  
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